

[별표 5] <신설 1981.8.24>

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표

토 지 매 수 및 보상금액별	위탁수수료요율 기준(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에 대한 비율)	비 고
10억원이하	20 / 1,000이내	1) "토지매수 및 보상금액"이라 함은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, 권리 또는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를 말한다.
10억원초과 30억원이하	17 / 1,000이내	2)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요율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30억원초과 50억원이하	13 / 1,000이내	3) 매수 및 보상업무완료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분할측량·지목변경 및 소유권변경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.
50억원초과	10 / 1,000이내	4)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위탁 수수료요율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5)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수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다.